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0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-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현행 규칙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
-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시 윤리 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,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 심사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.

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